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익상 필요로 보상을 받은 후 한정면허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촌소멸 방지 및 어업인 생계 유지를 위해 협동양식업 수심제한에 예외를 두고자 하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"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(강원특별자치도,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터 이내)를 말한다. 다만, 법 제26조제1항제6호 규정에 해당하여 면허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수면에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(강원특별자치도,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내)를 말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면허 양식업의 종류) ① ~ ④ (생 략) ⑤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심 범위”란 1년 중 해수면이 가 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5미터 초과 10미터 이내(강원특별자치 도,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 도의 경우에는 7미터 초과 15미 터 이내)를 말한다. (<u>신 설</u>)	제9조(면허 양식업의 종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법</u> <u>제26조제1항제6호 규정에 해당</u> <u>하여 면허가 제한되거나 정지된</u> <u>수면에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</u> <u>른 한정양식업면허를 처분하는</u> <u>경우에는 10미터 이내(강원특별</u> <u>자치도, 경상북도 및 제주특별</u> <u>자치도의 경우에는 15미터 이</u> <u>내)를 말한다.</u> ⑥ ~ ⑧ (현행과 같음)
⑥ ~ ⑧ (생 략)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14